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 현황

■ 김인희*

1. 개요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따라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장원리 기반의 전파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주파수 거래, 즉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는 특히 시장 환경 및 경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이용기간 도중 유희 주파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3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기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주파수 대가할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파수이용권의 정의 및 양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전파법 제14조), 2005년에는 동조 개정을 통해 임대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주파수 거래 제도의 최신 현황을 소개하고 Qualcomm UK의 1.4GHz 대역 주파수 거래 사례를 통해 실제 제도 운용 방식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 (043)531-4044, indeed@kisd.re.kr

2.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 · 임대제도 현황

2.1. 개요

영국은 통상 주파수 경매를 거쳐 낙찰자에게 무선전신면허(Wireless Telegraphy Licenc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Ofcom이 발급하는 이 면허 자체는 거래가 불가능하나, '면허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2006년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 제30조 (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Ofcom의 규정(Regulation)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는 Ofcom이 양도인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동조 (3)(d)항), 또한 그 외의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여 임대 가능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동조 (3)(d)항 후단). 한편 이러한 주파수 면허권 양도·임대 또한 다른 사업 활동처럼 소득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2.2. 주파수이용권 양도제도

영국은 유럽 EC의 2002년 전자통신 규제체계 지침(Directive 2002/21/EC)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도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 제168조¹⁾에 근거해 Ofcom이 2004년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Wireless Telegraphy (Spectrum Trading) Regulations)을 제정하면서, 주파수 거래에 대한 절차 및 세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제정 이후, Ofcom은 주파수 할당이나 주파수 거래 허가와 같이 사업자의 요구나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무선전신규정의 별표를 개정하여 거래 가능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며 대응하여 왔다. 가령, 2008년 3월 규정을 개정하여 1.4GHz 대역을 거래 가능 주파수 대역에 추가한 뒤(2008년 4월 발효) 2008년 5월 1.4GHz 대역 주

1) 해당 조항은 2006년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 제30조로 개정되었음

파수 경매를 시행한 것이 그 예이다. 제정 이후 적용 주파수 대역 확대를 위한 개정 연혁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영국 주파수 거래 무선전신규정 적용 대역 확대 연혁

시기	면허 종 및 대역
2006 (Amendment)	Concurrent Spectrum Access 면허 추가
2006 (Amendment) (No. 2)	Spectrum Access 면허 추가(412-414/422-424MHz)
2007 (Amendment)	Spectrum Access 면허에 1785-1805MHz 대역 추가, Self Coordinated Links 면허 추가
2007 (Amendment) (No. 2)	Spectrum Access 면허에 10/28/32/40GHz 주파수 경매 대역 추가
2008 (Amendment)	Spectrum Access 면허에 1.4GHz 주파수 경매 대역 추가
2008 (Amendment) (No. 2)	Spectrum Access 면허 및 Business Radio 면허 대폭 추가
2008 (Amendment) (No. 3)	Spectrum Access 면허에 542-550, 742-750, 758-766MHz 대역 추가

주: 2008년 2번째 개정은 Business Radio 유연성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됨²⁾

한편, 2011년 5월 주파수 거래의 규제 완화를 위한 Simplifying Spectrum Trading 성명에 기반하여 이동통신 주파수 거래 관련 별도의 무선전신규정인 Wireless Telegraphy (Mobil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1이 제정되었다. 통상 주파수 면허권 거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³⁾, 예외적으로 Ofcom의 승인 대상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면허권의 거래를 기존 규정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900, 1800, 2100MHz 대역 등 거래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추가로 확대되었다.

2) Business Radio 유연성 계획: 면허 종류를 21개에서 5개로 단순화, 기준 기술 조건 내에서 이용 변경 허용, 대역/지역 구분으로 면허 분할 허용, 면허 회수 시 5년 전 통지, 면허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함

3) 해당 제·개정을 통해 통상적인 주파수 면허 종(the generality of licence classes)의 경우 양도 시 Ofcom의 승인(Consent)을 필요치 않게 됨

〈표 2〉 영국 이동통신용 주파수 거래 무선전신규정 적용 대상 대역

Licence class(Column 1)	Frequency bands(Column 2)
Public Wireless Network	791 – 821 MHz
Spectrum Access	832 – 862 MHz
	880 – 915 MHz
	925 – 960 MHz
	1452 – 1492 MHz
	1710 – 1781.7 MHz
	1805 – 1876.7 MHz
	1899.9 – 1980 MHz
	2110 – 2170 MHz
	2350 – 2390 MHz
	2500 – 2690 MHz
3410 – 3600 MHz	

자료: Wireless Telegraphy (Mobil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1(2015년 최신 개정)

기존의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은 2012년 Wireless Telegraphy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2로 전문개정하면서 현행 규정이 되었으며, 별표의 적용 대상 대역에서 이미 분리되어 있던 이동통신용 주파수 등이 제외되었다. 한편 공공 주파수의 면허권 거래는 2009년 제정된 The Wireless Telegraphy (Recognised Spectrum Access and Licenc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를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상술한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제도 관련 법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영국 주파수이용권 양도제도 근거 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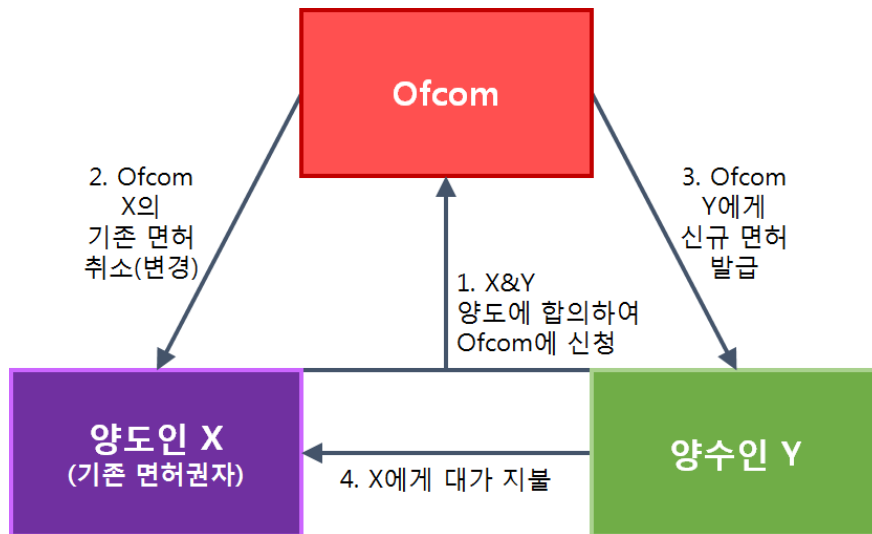
구분	근거조항	주요 내용
근거법	2006년 무선전신법 제30조 Wireless Telegraphy Act 2006 Section 30	무선전신면허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양도를 허용

구분	근거조항	주요 내용
절차 및 세부 규정	2012년 무선전신규정 (주파수 거래) Wireless Telegraphy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2 (2015년 최신 개정)	주파수 면허권 양도 관련 세부 규정 -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체 양도 - 공동 Spectrum Access 면허의 권리·의무 양도 - 위성(이동 위성 시스템의 지상 보완 요소) 면허의 권리·의무 양도 -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부분 양도 - 양도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 - 양도 절차
	2011년 무선전신규정 (이동통신 주파수 거래) Wireless Telegraphy (Mobil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1 (2015년 최신 개정)	이동통신 주파수 면허권 양도 관련 세부 규정 -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체 양도 -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부분 양도 - 양도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 - 양도 절차 - Ofcom의 승인 결정 시 고려사항 - Ofcom의 승인 조건 부여 근거 조항
	2009년 무선전신규정 (RSA 및 면허) (주파수 거래) Wireless Telegraphy (Recognised Spectrum Access and Licenc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09 (2015년 최신 개정)	공공 주파수 RSA 양도 관련 세부 규정 - RSA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체 양도 - RSA에 따른 권리·의무의 부분 양도 - 양도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 - 양도에 따른 RSA 신규 발급 절차 - Ofcom의 승인 결정 시 고려사항 - Ofcom의 승인 조건 부여 근거 조항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양도자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개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당사자는 거래 사실을 Ofcom에 통보해야 하며 Ofcom은 세부 내용과 거래 결과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당사자 합의(Agreements)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면허권자 및 상대방 인적사항, 면허 종, 주파수 대역, 지역 등의 거래정보는 TNR(Transfer Notification Register)에 공시된다. 단 계약당사의 미동의, 면허료(할당대가) 미납 여부, 면허취소 및 변경 예정 주파수 등의 경우에는 Ofcom의 승인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동통신 주파수 거래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를 위해 추가로 Ofcom의 승인(Consent)이 필요한데, 이때 Ofcom은 면허권자의 면허 조건 위반 여부, 면허의 자격 기준, 경쟁 왜곡 가능성, 국가 안보 등 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 부여에 대한 사항은 거래 결과 등과 함께 공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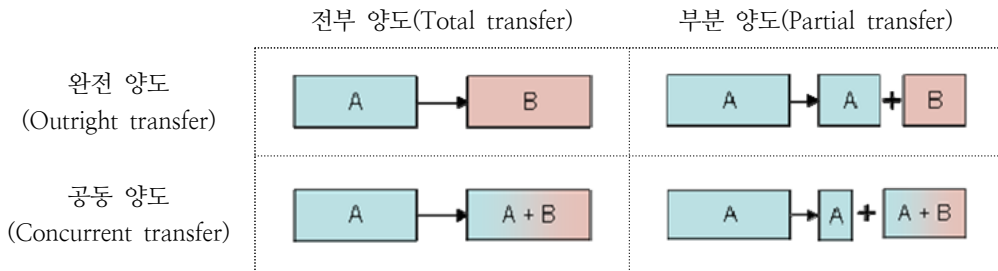
[그림 1]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 절차



자료: Ofcom(2011)

한편 면허 종이나 주파수에 따라 주파수의 지역, 대역폭, 시간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분 양도(Partial transfer), 거래 당사자, 즉 기존 면허권자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 양도(Concurrent transfer)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림 2] 영국의 주파수 거래 유형에 따른 조합



자료: Ofcom(2015)

상술한 2012년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Wireless Telegraphy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2)에는 이러한 주파수 면허권의 양도(완전, 전부 양도) 및 공동 양도, 부분 양도의 절차 및 세부 규정이 담겨 있으며, 각 거래 유형별로 해당 유형의 거래를 허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별표에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Ofcom이 제공하는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 관련 가이드라인인 Trading Guidance Not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영국 주파수 거래 유형에 따른 허용 범주

면허 분야	면허 종/주파수(지역)	거래 유형			
		완전	공동	전부	부분
Business Radio	Technically Assigned	○	○	○	△
	Area Defined	○	○	○	△
	Light Licensing comprising: • Simple UK·Simple Site • Suppliers	○	○	○	×
Maritime	• Coastal Station Radio(UK) • Coastal Station Radio(International) • Coastal Station Radio(UK) Area Defined • Coastal Station Radio(International) Area Defined	○	○	○	△

면허 분야	면허 종/주파수(지역)	거래 유형			
		완전	공동	전부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stal Station Radio(Marina) • Coastal Station Radio(Training School) • DGPS • Maritime Radio(Suppliers and Demonstration) 	○	○	○	×
Satell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manent Earth Station(PES) • Transportable Earth Station(TES)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tellite Earth Station Network • Satellite(Earth Station)(Non-Fixed Satellite Service) • Satellite(Earth Station)(Non-Geostationary Satellite Service) 	○	○	○	×
	Satellite(complementary Ground Components of a Mobile Satellite System)	×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Repeaters	○	○		
Fixed Wireless Access(FWA)	3.605-4.009 GHz	○	○	○	×
Spectrum Access	412-414 with 422-424 MHz 542-550 MHz(Cardiff) 758-766 MHz(Manchester) 790-862 MHz* 1452-1492 MHz* 1785-1805 MHz(NI) 2500-2690 MHz* 3410-3600 MHz* 10, 28, 32, 40 GHz	○	○	○	○
Concurrent Spectrum Access	1781.7-1785 with 1876.7-1880 MHz	○	×	○	×
Fixed Services	Scanning Telemetry	○	○	○	△
	Point to Point Fixed Links	○	○	○	△
	Self co-ordinated Links	○	○	○	△

면허 분야	면허 종/주파수(지역)	거래 유형			
		완전	공동	전부	부분
Public Wireless Network (PWN)	880-915 MHz* 925-960 MHz* 1710-1781.7 MHz* 1805-1876.7 MHz* 1899.9-1980 MHz* 2110-2170 MHz*	○	○	○	○
Science & Technology	High Duty Cycle Network Relay Points(NRP)	○	○	○	×

자료: Ofcom(2015)

주: ○) 해당 유형의 거래 가능(Fully flexible), ×) 해당 유형의 거래 금지(Restri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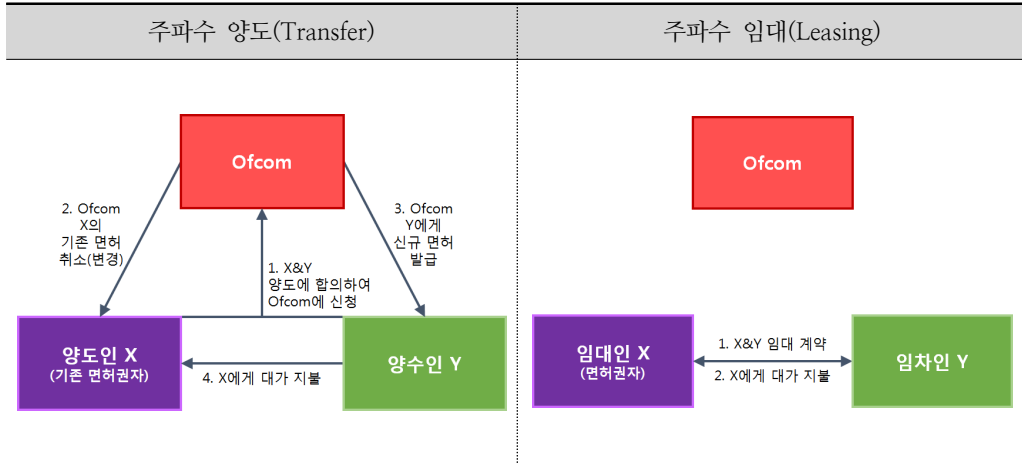
△) 지역별, 주파수별, 지역·주파수별 부분 양도에 일부 제한 존재(Semi-flexible)

주2: *) 이동통신용 주파수 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대역으로 면허권 양도 시 양도 허가 전에 Ofcom의 승인(Consent)을 필요로 하는 경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3. 주파수이용권 임대제도

영국은 2011년 주파수 거래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명 Simplifying Spectrum Trading의 일환으로 주파수이용권 임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면허권자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Ofcom의 개입이나 기존 면허 취소-신규 면허 발급의 절차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주파수 면허 및 면허료 지불 의무 등은 주파수 임대인에게 있으며, 주파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그림 3]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 및 임대 절차 비교



자료: Ofcom(2015)

주파수 임대는 발급된 면허증(Wireless Telegraphy licence)상에 임대 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주파수에 한해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면허 변경을 거쳐야 한다. 면허상의 정의에 따르면 주파수 임대는 면허의 혜택(benefit)을 타인, 즉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절차가 간소한 만큼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 관련 가이드라인인 Trading Guidance Note에 명시된 종의 면허만 임대 허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주파수 임대 계약이 가능한 면허 종은 <표 5>와 같으며, 이동통신용 주파수(Wireless Telegraphy (Mobil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적용 대상 주파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Ofcom은 임대 가능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임대 가능한 주파수 면허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며 간섭조사 등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비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영국의 주파수 임대 가능한 면허 종(Class)

면허 분야 및 유형	면허 종
Business Radio	Area Defined
	Suppliers Light
Spectrum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가능한 Spectrum Access 분야 주파수는 모두 임대 가능 - 단, Mobile Trading Regulations의 적용 대역에 해당하거나 Concurrent Spectrum licence 주파수인 경우에는 임대 불가

자료: Ofcom(2015)

면허증에 기재된 주파수 임대 관련 규정에는 임대 가능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전대, 유사시 Ofcom의 사후 집행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임대 가능 기간은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임대인이 주파수 양도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거나 Ofcom이 면허를 취소할 경우 모든 임대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는 면허료 지불 및 면허에 따르는 모든 의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한들을 조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먼저, 임대인은 임차인과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Ofcom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이나 간섭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면허의 주요 조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면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설비가 폐쇄(closedown)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넷째, 임대인의 무선 설비 사용이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임차인(전대 가능한 주파수의 경우 전차인 포함)의 기록을 보존하고, Ofcom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면허의 권리를 대역·지역으로 나누어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밴드 매니저로서 주파수 가용성 및 품질에 대한 임차인의 니즈를 고려하여 주파수 사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분쟁 및 간섭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1창구(first port of ca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의 면허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준수하지 못할 경우 무선전신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임대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구속 받을 수 있다.

임대 가능한 주파수의 경우 1단계의 전대를 허용하며, 실제 가능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 내에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임차인은 면허에 따라 해당 면허의 혜택을 대역·지역으로 나누어 1명 이상의 전차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나, 전차인은 제 3자에게 추가로 임대할 수 없다.

Ofcom은 면허 조건 위반, 간섭 이슈, 관련 기록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필요한 경우)에게 일련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Qualcomm UK의 1.4GHz 대역 주파수 양도 사례

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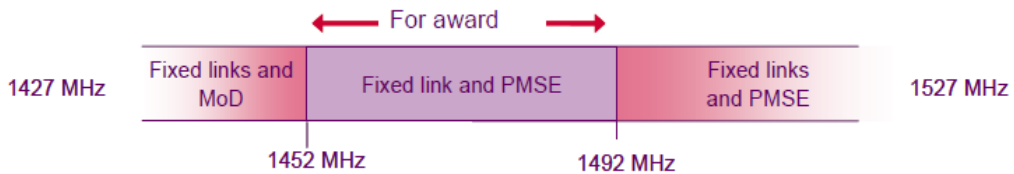
2015년 10월 Qualcomm UK는 보유한 1.4GHz 대역 40MHz폭(1452~1492MHz) 주파수를 20MHz폭씩 분할하여 Vodafone UK와 H3G UK에 양도하고자 했다. Ofcom은 주파수 거래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거래가 경쟁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Vodafone UK(면허번호 1053632)와 H3G UK(면허번호 1053624)에 신규 면허를 발급하였다. 1.4GHz 대역은 당시 Qualcomm UK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음성·영상·데이터 전송 기술 'MediaFLO' 용도로 경매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에서 자체 개시한 모바일 TV 서비스 'FLO TV'가 실적 악화로 2011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⁴⁾ 주파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양도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Vodafone이 약 £139,000,000, H3G가 약 £156,000,000 가량 지불하여 Qualcomm UK는 적어도 2억 파운드 이상(한화 기준 약 3,518억 원 수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4) Qualcomm은 2011년 12월 미국에서 경매 할당받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AT&T에 양도함

3.2. 대역 이력

해당 대역은 2008년 5월 약 1.7MHz폭 블록 16개(1452-1479.5MHz), 12.5MHz 폭 블록 1개(1479.5-1492MHz)로 최초 경매 할당되었으며 Qualcomm이 대역 전체인 40MHz폭을 총 £8,334,000(한화 기준 약 169억 원 수준)에 낙찰받았다(면허번호 309189).

[그림 4] 영국 2007년 1.4GHz 대역 주파수 활용 현황



자료: Ofcom(2007)

국제 분배는 고정, 이동, 방송, 방송위성업무이며, 혼·간섭 회피를 위하여 세부 대역별 출력 기준을 부여한 것 외에 용도 및 기술방식은 중립으로 할당되었다. 한편 최초 이용기간(Initial term)은 15년으로 그 이후에도 규정된 사유⁵⁾로 Ofcom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권자가 제3자에게 면허를 양도하기 전까지 면허는 계속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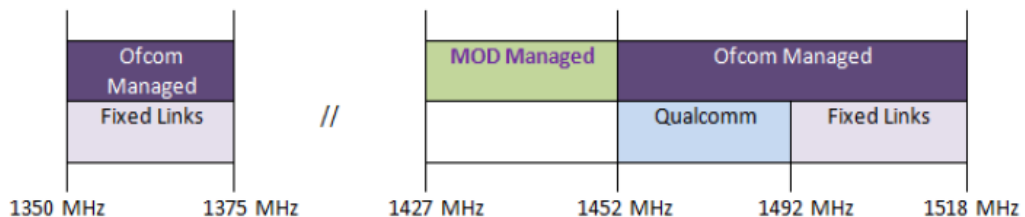
1.4GHz 대역은 2008년 주파수 경매에 즈음하여 Ofcom의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Wireless Telegraphy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적용 대상 대역에 추가되었으며, 지역·주파수별 부분 양도가 가능한 대역(Part 4)으로 분류되어 추가 당시부터 주파수 면허권의 양도 및 부분 양도가 가능하였다.

5) 면허권자의 요청, 할당조건 위반, 할당대가 미납, 주파수 관리, 국가안보 및 국제의무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Ofcom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5년 전 사전 통지가 필요

3.3. 면허 변경

2013년 10월 Qualcomm은 보유한 1452-1492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SDL(보조하향링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허의 기술 조건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Ofcom은 2015년 5월 해당 블록을 고정·이동통신의 SDL(보조하향링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조건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의 전자통신위원회(ECC: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가 ECC Decision 13(03)을 통해 1452-1492MHz 대역을 SDL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2013년 11월 승인, 2014년 8월 최종 기술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유럽위원회(EC) 산하의 무선주파수위원회(RSC: Radio Spectrum Committee)가 Implementing Decision 2015/750을 통해 2015년 5월 1452-1492MHz 대역을 SDL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에서의 조화를 결정한 배경도 뒤따른다. Ofcom은 면허 변경을 승인하면서, 인접 고정링크 대역(1492-1517/1350-1375MHz)과의 혼간섭 해소를 위해 관련 사항을 함께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림 5] 영국 1.4GHz 대역 및 인접 대역 관리 및 활용 현황



자료: Ofcom(2015)

이러한 면허 변경에 따라 해당 대역은 2015년 6월 Ofcom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Wireless Telegraphy (Mobile Spectrum Trading) Regulations 2011) 대상 대역에 추가되었다.⁶⁾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파수 대역은 모두 권리 및

의무의 전부 양도 및 주파수 대역 일부, 면허 지역 일부에 대한 부분 양도가 가능하나, 절차상 Ofcom의 승인(Consent)을 필요로 한다.

3.4. 거래 경과

2015년 8월, Qualcomm UK는 보유한 1452-1492MHz 대역 중 1452-1472MHz는 Vodafone UK에, 1472-1492MHz는 H3G UK에 양도하는 2건의 주파수 양도 제안서를 Ofcom에 제출하였다. 이에 Ofcom은 2015년 9월 양도 제안서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2건의 주파수 면허권 양도를 승인하였다.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Ofcom은 첫째, 면허권자 혹은 공동 면허권자가 권리·의무를 양도할 무선 전신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둘째, 양수인이 무선 전신 면허의 조건, 규정 및 제한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양수인이 해당 면허 종의 발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넷째, 양도의 결과로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 여부, 다섯째, 국가 안보, UK의 공동체 의무 및 국제 협정, 통신법 제5조(Communications Act Section 5)나 무선전신법 제5조(Wireless Telegraphy Act Section 5)의 Ofcom 관련 장관 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도로 인한 경쟁 왜곡 가능성에 대하여 Ofcom은 충분한 경쟁 문제를 야기하는지 초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 중 아무도 주파수 양도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Ofcom은 해당 대역을 저대역 주파수로 간주하고 저대역 주파수 보유 비대칭성으로 인한 경쟁 왜곡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4개 사업자 모두 저대역을 보유하고 있어 우려가 낮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검토 당시 BT Group의 EE 인수(2016년 1월 승인), H3G UK의 O2 인수(2016년 5월 승인 거부) 계획이 있었으나 승인 심사 도중이었으므로 주파수 면허권 양도 승인 결정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승인 결과에 따라, 2015년 10월 Ofcom은 Vodafone UK 및 H3G UK에 1.4GHz

6) Ofcom은 면허 변경(SDL 용도 이용 허용)에 따라 주파수 거래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거래 관련 무선전신규정을 개정하였음(2015년 6월)

대역 주파수의 신규 Spectrum Access 면허를 각각 발급하였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규정된 취소 사유로 Ofcom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권자가 면허를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면허권자는 Qualcomm이 2008년 낙찰받은 면허의 최초 이용기간 만료 시점인 2023년 5월부터 매년 무선전신법 제12조에 근거해 책정되는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면허가 양도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기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4. 결어

본고에서는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Qualcomm UK의 2015년 1.4GHz 대역 주파수 거래 사례를 통해 실제 제도 운용 방식을 살펴보았다. 소개한 사례의 시사점을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의 장점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활성화 시 우려사항으로 논의되는 이슈인 사업자의 주파수 매집 가능성,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 문제 및 혼·간섭 우려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례의 1.4GHz 대역은 당시 고정 링크 및 PMSE⁷⁾로 사용되어 온 주파수이다. Qualcomm UK는 해당 대역을 모바일 TV 서비스 사업을 위해 경매로 할당받았으나, 미국에서의 서비스 중단 등을 볼 때 주파수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 그러나 면허 변경을 거쳐 2개의 통신사에 나누어 양도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SDL(보조다운링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시장 및 경영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기 여의치 않게 된 주파수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영국은 2011년 주파수 거래 간소화 이후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한하여만 별도 규정을 통해 양도의 승인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례에서 Ofcom은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파수 보유 비대칭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승인 전 평가를 거쳤다. 이렇듯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매집 등 시장의 경쟁 상황에 해를 끼

7) PMSE(Programme-making and Special Events): 무선 마이크, 위키토키 등 방송제작용 기기의 무선신호를 전송하는 용도

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경쟁 왜곡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해당 사례의 양도 과정에서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역을 발굴하고자 한 업계 등의 노력, 유럽 차원의 합의체를 통해 이뤄진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 및 조정, 이에 따른 Ofcom의 혼간섭 해소를 위한 조치 등이 뒷받침되었다. 기술 조건 변경과 같은 면허 변경 절차 등 영국 전파관리제도 내의 제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유인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참고문헌

- 송송이(2010), “영국의 주파수거래제(Spectrum Trading) 현황 및 개선 방향”, 『전파방송통신저널』 제22호, 한국전파진흥원, pp.42~53.
- 오성만·선종준(2010), “주요국의 주파수 거래에 관한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전파방송통신저널』 제30호, 한국전파진흥원, pp.4~18.
- 유현용(2011), “유럽연합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의 비교법적 고찰”, 『최신외국법제정보』 2011년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pp.80~94.
- 이승훈·선종준·김영훈·송송이·오성만(2010),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 CEPT(2013). “The harmonised use of the frequency band 1452-1492 MHz for Mobile/Fixed Communications Networks Supplemental Downlink(MFCN SDL)”, ECC Decision (13) 03.
- EC(2015). “Revision of the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the harmonised use of the 1452-1492 MHz frequency band for wireless broadb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Working Document, RSCOM15-01.
- Ofcom(2007). “Award of spectrum 1452-1492MHz”, Information Memorandum.
- _____(2007). “Proposals for liberalisation and simplification for business radio licensing and pricing”.

- _____(2007). “UK Broadband application for licence variation - This document sets out Ofcom’s decision on UK Broadband Limited’s request to vary its Wireless Telegraphy 3.5 GHz licence”, Statement.
- _____(2007). “UK Broadband application for licence variation”, Consultation.
- _____(2009). “Simplifying Spectrum Trading - Regulatory reform of the spectrum trading process and introduction of spectrum leasing”, Consultation.
- _____(2010). “Simplifying Spectrum Trading - Reforming the spectrum trading process and introducing spectrum leasing“, Interim statement.
- _____(2011). “Simplifying Spectrum Trading - Spectrum leasing and other market enhancements”, Final statement.
- _____(2011). “Notice of proposals to make 900MHz 1800MHz 2100MHz public wireless network licences tradable”, Consultation.
- _____(2013). “Statement on the Requests for Variation of 900 MHz, 1800 MHz and 2100 MHz Mobile Licences”, Statement.
- _____(2014). “Variation of 1800 MHz mobile licences to increase power limit - A statement on requests for an increase of 3 dB in the maximum permissible base station power”, Statement.
- _____(2015). “Variation of the Spectrum Access licence for 1452-1492 MHz and changes to fixed link use in the paired bands 1350-1375 MHz and 1492-1517 MHz,” Statement.
- _____(2015). “Inclusion of the 1452 - 1492 MHz, 2350-2390 MHz and 3410-3600 MHz bands in the Mobile Trading Regulations”, Statement.
- _____(2015). “Trading Guidance Note”.